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해사안전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상교통 관리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는 한편,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국가해사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

해사안전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종전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을 국제협약 이행계획으로 개정함(안 제8조).

마. 업무 위탁 사항 신설(안 제11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13조).

「해사안전기본법」에 신설된 안전투자 공시 및 조사·검사 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해양시설 및 여객·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3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 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

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해사안전관리의 분야별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

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좌초·전복(顛覆)·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유류(油類) 또는 기름이 유출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 30킬로리터 이상
나.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 100킬로리터 이상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검계획)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5. 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의 날에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행사의 실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제도 관리
3. 법 제21조에 따른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⑥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영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 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50	200	300
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 로 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 <u>해사안전기본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 <u>해사안전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u>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u> (이하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을 말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4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

제3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

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④ 해양

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확정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 한 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

할 것

4.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해사안전관리의 분야별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 ~ ~ ~ ~

제19조의2(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57조제1항 ~ ~ ~ ~ ~

제4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 ~

제4조의3(점검계획)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 ~ ~ ~ ~

제20조의2(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97조의4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신 설>

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 ~ (현행과 같음)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 ~ ~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 ~ ~ ~ ~ (현행과 같음)

제9조(점검계획) ① 법 제20조제2항에 ~ ~ ~ ~ ~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신 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제도 관리
3. 법 제21조에 따른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200-5821